

1. 개정 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상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
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“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” 및 “제22조에
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”에 대한 일몰을 해제(안 제29조
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9조(규제의 재검토) 문화재청</u> <u>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</u> <u>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</u> <u>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</u> <u>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</u> <u>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</u> <u>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1.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</u> <u>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: 2015</u> <u>년 1월 1일</u> <u>2.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</u> <u>자등의 행정처분기준: 2015년</u> <u>1월 1일</u>	<u><삭 제></u>